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충 청 북 도 의 회
행 정 문 화 위 원 회

「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1. 3. 17.(목)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 의 자 : 김동환 의원 외 12인
- 나. 발의일자 : 2011년 3월 2일
- 다. 회부일자 : 2011년 3월 4일
- 라. 상정일자 : 2011년 3월 10일

(제29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수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생략)

가. 제안이유

- 충청북도를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우리지역의 문화유적을 정확히 안내 설명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전문해설 인력 양성과 운영을 통한 관광 충북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 도내 관광현장에서 문화·관광 발전을 위한 파수꾼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를 적극적으로 활용 및 지원할 수 있는 관련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적용범위(안 제1조~3조)
-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안 제4조)

- 문화관광해설사의 교육 및 평가(안 제5조)
- 문화관광해설사의 현장수습근무 및 표식(안 제6조~제7조)
-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비 등 지급(안 제8조)
- 문화관광해설사의 사무의 위탁근거(안 제9조)
- 문화관광해설사의 자체 협의회 구성 및 지원(안 제10조)

3. 검토보고 요지

(행정문화전문위원 : 손자용)

금번 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충청북도를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우리지역의 문화유적을 정확히 안내 설명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전문해설인력 양성과 운영을 통해 충북관광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문화관광해설사의 적극적 활용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조례의 용어정의와 적용범위를 지정하였으며,
- 안 제4조에서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를 규정하고,
-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문화관광해설사의 교육 및 평가, 현장수습 과정 운영, 표식 등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8조에서는 활동비 지급, 안 제9조에서는 사무위탁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 안 제10조에서는 문화관광해설사의 협의회 구성과 운영비 지원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의 인력양성과 교육 등 지역

관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음.

다만, 문화관광해설사 조항이 포함된 관광진흥법이 위원회 대안으로 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본회의 의결만 남은 상태로, 개정안이 의결되어 공포된 후 6개월 이내에 시행령을 만들도록 되어 있는바, 시행령 제정내용에 따라 금번 조례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될 것임.

또한, 안 제10조제1항의 도협의회 구성에 있어서는 민간협의회 구성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 같은 조 제2항의 운영비 지원은 타 민간협의회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보다 세밀한 검토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수정의결

7. 수 정 안 요 지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1. 3. 10, 박종성 의원

○ 수정이유

법규문서 용어정의의 명확화와 협의회 구성과 지원방안의 문제점 도출에 따른 조항 삭제

○ 수정 주요내용

- 제2조(정의)에서 제1호와 제2호로 구성되어 있는 조항을 하나의 조항으로 변경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관광해설사“란 충청북도(이하 ”

도“라 한다)를 방문한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로서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과 수습기간을 거쳐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 안 제10조를 삭제하고, 안 제11조를 제10조로 함.

8.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9. 기 타 필 요 한 사 항 : “없 음”

10. 심 사 보 고 서 첨 부 서 류

○ 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등

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관광해설사”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를 방문한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로서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과 수습기간을 거쳐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안 제10조를 삭제하고, 안 제11조를 제10조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관광해설사”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p> <p>1.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를 방문한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 문화, 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과 안내를 제공하는 자원봉사자</p> <p>2.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주관하는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교육 대상자 선정심사에서 선발된 후, 도지사가 인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 이수과 소정의 평가에 합격하고 현장수습 기간을 거쳐 선발된 사람</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관광해설사”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를 방문한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로서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과 수습기간을 거쳐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p>
<p>제10조(협의회) ① 문화관광해설사는 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p> <p>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도협의회에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p>	<p><삭제></p>
<p>제11조 (생략)</p>	<p>제10조 (제정안과 같음)</p>

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문화·관광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전문해설 인력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관광해설사"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를 방문한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로서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과 수습기간을 거쳐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내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적용한다.

제4조(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 문화, 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문화관광자원 및 주변환경 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② 문화관광해설사는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

제5조(교육 및 평가) ① 도지사는 양성된 해설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해설서비스의 제공자로서 갖추어야 될 심화된 표현기술 및 기획을 갖출 수 있도록 문화관광해설사 보수교육 과정과 새로운 해설 인력의 확보를 위한 문화관광해설사 신규 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다.

제6조(현장수습 과정 운영)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신규 양성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에서 합격한 사람에 대해 문화관광해설사로서의 실제 해설 활동이 가능하도록 현장 수습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표식) ① 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표식을 발급해야 한다.

② 문화관광해설사가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제1항의 표식을 소지하고 문화관광해설사의 신분을 알려야 한다.

제8조(활동비 지급 등) ① 문화관광해설사가 도 및 시·군에서 주관·주최하는 계획에 의하여 문화관광해설 관련 활동을 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가 해설 역량의 증진을 위한 자료수집 및 관광객들에 대한 해설을 목적으로 도내 문화관광지를 방문할 시, 입장료 및 주차료 등의 감면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안전한 환경속에서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른 직무수행 중의 사고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제9조(사무위탁) ① 도지사는 조례의 목적에 적합한 교육기관에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및 평가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은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문화관광해설사는 이 조례에 의하여 문화관광해설사의 자격을 받은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발취

□ 관광기본법

제1조(목적) 이법은 관광진흥의 방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 친선을 증진하고 국민경제와 국민복지를 향상시키며 건전한 국민관광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에 관한 국가 시책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외국 관광객의 유치) 정부는 외국 관광객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 홍보를 강화하고 출입국 절차를 개선하며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관광종사자의 자질향상) 정부는 관광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훈련과 그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국민관광의 발전) 정부는 관광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촉구하여 건전한 국민관광을 발전시키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